●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337)

2021. 4.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337

Ⅰ.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04월 0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방법이 없어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임

나. 이에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 시 적절한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설치·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1. 7. ~ ’23. 12.

○ 인　　력 : 센터장 1명(비상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명(상근), 행정전산원 1명(상근), 상담원 1명(상근)

○ 소요예산 : 480,000천원(’21년)

○ 위탁내용

-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 제공
- 독성물질 노출, 중독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관리

나. 필요성

○ 독성물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간호사 등)이 요구되므로, 응급의료 정보제공과 치료연계가 가능한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1]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 내용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PCC(Poison Control Center)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임.

○ 2011년 대두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독성물질의 관리에 대한 공적개입 필요성이 증대된 바,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음.[2]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중앙일보 “화학물질 4만 개 중 독성 파악 15%뿐…“중독센터 만들자” 2016년 6월 16일.

○ 이에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4조제1항[3]에 근거하여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동의안에서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 제공
- 독성물질 노출, 중독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관리

○ 센터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사업비용은 480,021천원으로 추계되며, 해당 편성내역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연간 위탁비용

(단위: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1년	480,021	민간위탁금	125,440	93,478	261,103
2022년 ~2023년	484,778	민간위탁금	270,960	109,000	104,818

3)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사무의 범위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센터를 통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의료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임.

□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주요 기능**(WHO 독성센터 운영지침 및 권고사항 참고)

(1) 독성물질 DB 구축 (상담 및 교육 활용 목적의 독성정보 관리)

(2) 시민대상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 대상별(일반시민, 학교, 어린이집 등) 맞춤형 교육 및 홍보

(3) 전문적인 상담

- 독성물질(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로 인한 중독사례 상담

(4) 중독사고 대응(응급상담 및 치료 연계,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 응급상담(8h→24h) 후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중독사고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약물안전센터 등) 실시간 협업 체계 구축

(5) 응급상담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독성 사고를 예측하는 모니터링 및 감시

※ 자료출처: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가정 및 사업장(쥬얼리 등)에서 독성물질 중독사고 발생시

-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하며

- 피해 사례별로 피해지원(사고조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연계 추진

· 환경부 환경보건센터(환경독성분야),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질병관리청 등 연계

· 특히, 사업장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연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피해보상 등 추진)

※ 자료출처: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사업장내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 부서는 고용노동부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4]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입권한이 없고, 지방고용관서[5]가 개입권한을 가지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일부 위임하기 전에는 사업장에 대한 개입은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정보지원과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등으로의 연계만을 담당할 수 있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 제1호부터 제53조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반을 지방고용노동관서(서울지방노동청)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음. 이는 상위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한계로 해석할 수 있음.

다. 민간위탁사무의 법률적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6)]

○ 조례 제5조[7)]는 시장으로 하여금 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2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나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정보의 제공은 다년간의 지식습득을 전제로 한 전문적 국가면허를 갖춘 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전

---

6)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7)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이에 해당 사무는 독성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화학제품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3 종합의견

○ 서울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PCC를 도입해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자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생활화학제품 DB의 구축, 의료정보의 제공 등 센터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는 바, 동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